

< (공사)지역업체 참여도 산정방법 변경 및 나라장터 신청방법 안내 >

□ 시설공사 'PQ심사' 및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18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현 재	변 경
지역 업체 정의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u>주된 영업소가 소재한</u>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u>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u> 업체
지역 소재 기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자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하되,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만큼 인정

□ 지역소재기간 산정 방법 예시

○ 입찰공고 내용

- 입찰참가자격: 토공사업 등록업체, - 공사현장: 서울시

○ 입찰참여 업체('08년 제조업체로 법인설립)

- 건설면허 사항: '11년 토목공사면허 취득, '13년 토공사업 면허 취득

- 소재지 변경이력: '08년 서울시종로구 → '10년 대전시 → '11년 서울시중구 → '15년 서울시동대문구



☞ 지역소재기간(5년)은 입찰공고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연속하여 소재한 기간 동안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이므로 '13.01.02.부터 공고일까지 산정

□ '본점소재지 등기일' 나라장터 신청방법 안내

○ 시설공사 지역업체 평가와 관련된 항목으로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법인사업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10년 이상 다른 시·도로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0년 이상은 만점(배점한도) 적용

< 나라장터 신청방법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조회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 본점소재지 등기일] 에서 신청 ⇒ 조달등록팀에서 검토 후 승인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관련 시설총괄과 문의처

- (PQ심사) 042-724-7357, 7361, 7365

- (적격심사) 042-724-7346, 7278, 7340

붙임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

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끝.

(붙임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

(붙임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질의 내용 >

제목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지역업체 판단 기준

내용 2000년에 설립된 A라는 비건설업체가 2015년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등록)할 경우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이 2000년이 되는지, 2015년이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답변 내용 >

제목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지역업체 판단 기준

내용 2000년에 설립된 A라는 비건설업체가 2015년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등록)할 경우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이 2000년이 되는지, 2015년이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701-12924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업체 판단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지역업체참여도를 평가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라 지역업체기여도를 평가하는 경우, 지역업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나. 동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르면 상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90일 이상 대상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와 선우다스림 주무관(☎044-215-5228, sunda0225@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